IPCC의 사업과 PAPER-LESS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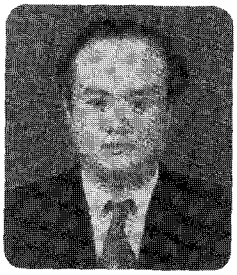

김현철 · 변리사

목 차

Ⅰ. 설립경위
Ⅱ. 조직 및 인원
Ⅲ. 사업내용

〈이번호에 전재〉

Ⅰ. 설립경위

- 재단법인 산업재산권 협력 센타(IPCC)는 1985년 12월 통상산업大臣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은 특허청의 PAPER-LESS계획중 F-TERM검색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팽대한 F-TERM 문헌해석 및 개발한 F-TERM을 이용한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것이다. 1985년 겨우 16명으로 스타트한 IPCC가 단기간에 총 직원수 500명이 넘는 대조직으로 발전한 것은 특허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이다.

Ⅱ. 조직 및 인원

- 400명 이상의 주석부원이 검색, F-TERM에 의한 문헌해석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석부원의 채용시 평균연령은 55세로써 130여개의 회사 출신의 관리직 기술자이다. 기업에서 습득한 지식을 65세까지 발휘하고 있다. 즉, 총직원수는 500명 이상이다.

Ⅲ. 사업 내용

IPCC의 주된 사업은 크게 나누어 특허청의 PAPER-LESS계획에 의한 F-TERM 문헌에 대한 분석과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등록업무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수속등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의한 특허,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 등이 있다.

1) F-TERM 문헌 해석

F-TERM문헌해석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財)産業財産權協力センター組織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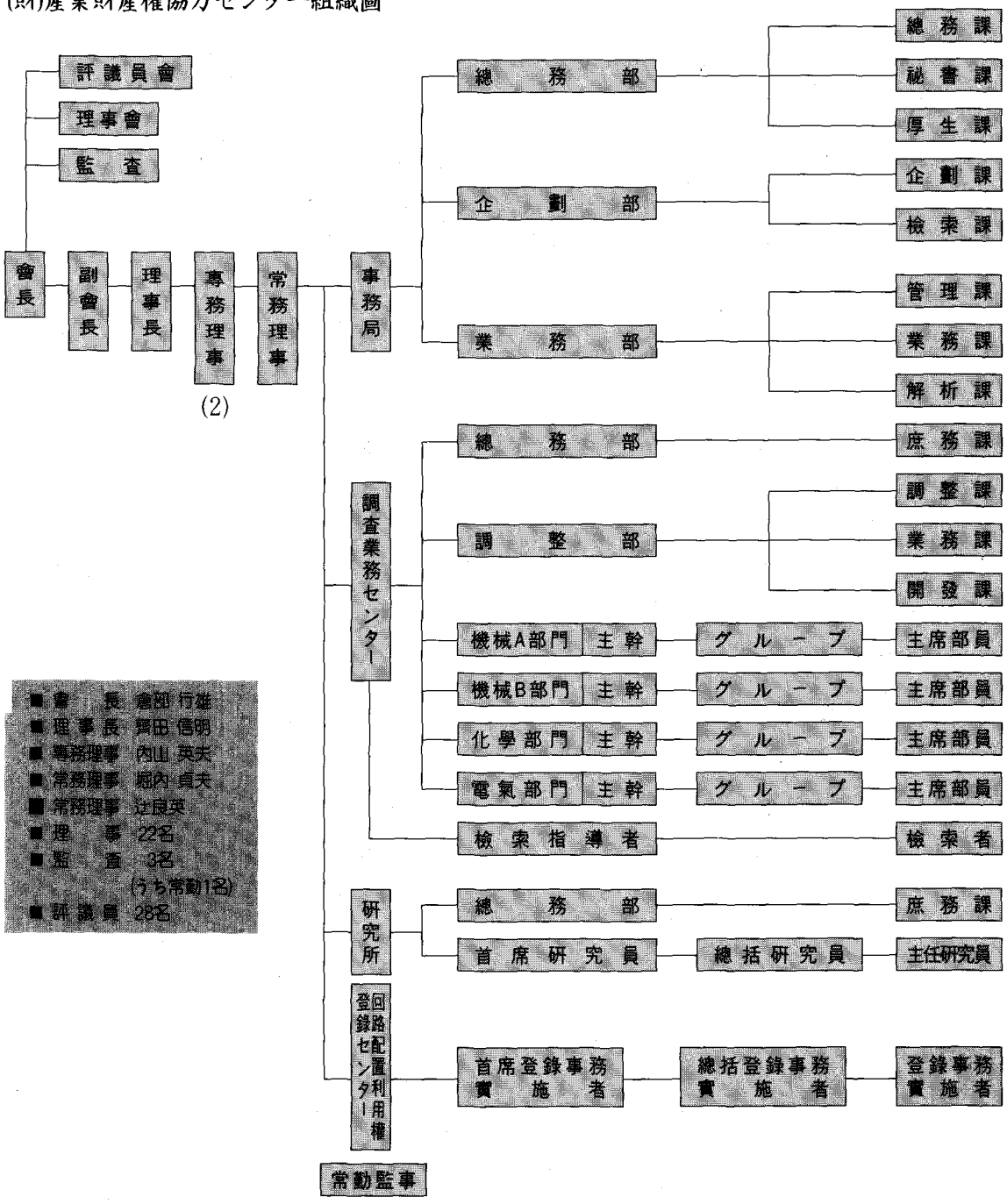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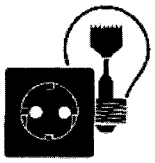

출원의 내용을 해석하여 F-TERM등을 부여하는 업무이다. F-TERM 문헌해석은 그 기술분야에 정통하고 있는 기술자가 작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가) 계명기(재단설립~1988년도)

1985년, F-TERM 문헌해석 업무는 지금까지 (사)발명협회가 하고 있던 업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개시되었다.

그 후 F-TERM 검색 시스템의 개발을 계획적인 향상 덕분에 1988년도에 해석건수를 70~80만건/년으로 높힐 수 있었으며, 1000명을 넘는 해석자의 확보와 50명을 넘는 해석추진자(KP)를 확보할 수 있었다.

(나) 해석 200만건/년 달성(~1990년도)

10년을 목표로 F-TERM검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매년 200만건을 넘는 문헌해석을 4~5년에 걸쳐서 실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1989년도 126만건 실적에 대하여 1990년도는 200만건을 넘는 문헌을 해석하기 위하여는 1,000명 정도의 해석자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다) F-TERM의 재작성 작업(1991년도~)

F-TERM 검색시스템은 향후 기술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개발되어 있으므로 기술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개발시점에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분야는 새로운 관점의 검색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분야에는 개발당초에 정해진 관점으로 검색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문헌수가 많아지는 등의 검색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F-TERM 리스트의 관점신설, 변경등의 재작성작업이 필요하다. IPCC에서는 1991년부터 제작성분의 F-TERM 문헌 해석을 개시하였다.

(라) 조기해석(1993년~)

F-TERM 검색시스템의 이용가능 분야가 확대되고 종합적, 체계적 시책 등의 도입에 의하여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은 순차적으로 단축되었으며, 심사관의 착수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공개공보 발행후 조속히 F-TERM 데이타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 해석의 종료(1994년도)

10년 계획으로 개시된 특허청의 PAPER-LESS 계획은 드디어 완성단계로서 순조롭게 진행되면 1994년도에는 마지막으로 개발된 분야(R-T 크스)의 해석이 종료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조기 해석분의 문헌해석, 더욱이 출원후 보다 빠르게 문헌해석을 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선행기술조사 업무(F-TERM 검색)

IPCC는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화 시책의 일환으로 PAPER-LESS 계획의 성과물인 F-TERM 검색시스템을 이용한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것은 특허청의 심사관이 행하는 심사업무중 반드시 심사관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행기술조사의 일부를 IPCC가 담당하므로서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가) F-TERM 검색업무의 개시(1989년도)

1989년도는 IPCC 내에 서치 룸이 개설되어

독자의 검색용 단말기에 의한 F-TERM 검색업무가 개시되었다. 검색업무에 종사하는 검색자는 약 80명, 검색지도자는 6명, 검색용 단말기 30대로 현재의 규모의 1/5이하의 규모이다.

(나) 특별법에 의한 지정조사 기관(1990년도)

1990년 6월, 산업재산권에 관한 수속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특례법)이 성립하여 동년 10월 1일 IPCC는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IPCC는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 기부행위의 변경, 조사업무 규정의 제정, 검색자 및 검색지도자 전원의 조사업무 실시자로서의 선임을 행한다. 특례법에 의하면 지정조사 기관인 IPCC는 검색지도자, 검색자 및 기타 직원은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지며, 더욱이 형법(수뇌죄 등)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지정조사기관으로 지정된 IPCC는 보다 공정·정확하며 원활한 조사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 검색 50,000건/년(1991년도)

1990년도의 F-TERM 검색업무는 예정대로 20,000건을 달성하였지만 1991년도의 F-TERM 검색의 실행에는 특허청측과 IPCC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측에는 각 심사실당 전년도의 2.5배의 외주안건을 발주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IPCC 측에서는 1년간 검색자를 100명 정도 채용, 연수를 하여 계획대로 검색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 인재의 확보에 크나 큰 어려움이 있었다.

(라) 조사업무 센타 발족(1992년도)

그후 F-TERM 검색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특허청으로 부터의 수주건수를 확대하였다. 이에따라 증대하는 업무에 원활히 대응하고 다양화하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2년 4월에 조사업무센타를 발족시켰다. 이 특징은 특허청의 특·실 심사부의 심사실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다. 주간은 F-TERM 문헌해석업무의 효율화에도 기여한다.

(마) 특허청의 V2 시스템의 대응(1993년도~)

1993년 7월 특허청에는 V2 시스템으로 온라인 발송, 온라인 열람청구 시스템과 함께 심사주변시스템의 이용을 개시하였다. V2 시스템에 대응하여 IPPC측은 PAPER-LESS 출원분에 대하여 검색대상인 본원을 특허청의 심사용 서류를 직접 사용하며, 특허청의 V2 단말기로 심사관이 검색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보고서와 함께 전자데이타를 납품하고 있다.

3) 기타 PAPER-LESS 관련업무

IPCC에는 특허청의 PAPER-LESS 계획의 협력을 위하여 기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가) F-TERM 리스트 개발업무

IPCC는 일부의 테마에 대하여 F-TERM 리스트의 개발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250테마의 터엄리스트의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 리스트의 약 10%에 해당한다. 현재는 재수정분의 F-TERM 리스트 개발이 행해지고 있다.

(나) F-TERM 해설원고작성 업무

F-TERM 검색의 입문서인 F-TERM 해설서의 원고작성을 행하고 있다. F-TERM 해설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단말기 상에서 이용가능하며,

(재)특허정보기구의 PATOLIS검색을 이용할 때도 사용된다.

(다) J-TERM 부여업무

특허청의 심판결례 검색시스템(J-TERM 검색 시스템)의 데이타 검색에 필요한 참고심판결 및 심결취소소송판결에 대하여 문헌해석을 하며, J-TERM을 부여하는 업무를 행한다.

(라) 공개기보의 분류부여

특허청에는 출원인에 대하여 출원전에 발명을 정확히 평가하여 과감히 권리화의 필요화가 없는 것에 대하여 공개기보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공개기보를 심사관이 심사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공개기보에 IPC 분류의 부여 및 전자데이타를 하고 있다. IPCC와 이 공개기보의 IPC 분류의 부여 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00,000건의 작업을 하였다.

4)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회로에 관한 등록사무

반도체 직접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받아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등록사무를 위하여 1985년 12월 3일 통상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다.

(가)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① 보호대상

독자적으로 창작된 반도체 직접회로의 회로배치(회로소자 및 도선의 배치)이다.

② 등록

회로배치를 독자적으로 창작한 자는 등록하는 것에 의하여 회로배치 이용권을 가진다.

③ 권리내용

회로배치 이용권자는 등록한 회로배치를 이용하여 반도체 집적회로를 업으로서 제조, 양도, 임대, 전시, 수입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나) 회로배치 이용권 등록센타의 등록사무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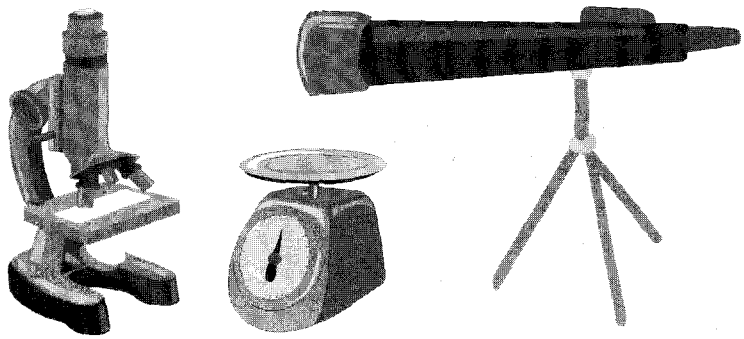
- 회로배치이용권의 설정등록 및 권리이전, 전용(통상) 이용권의 설정, 질권설정 등의 권리관계의 등록업무를 행한다.
- 등록된 회로배치이용권에 관한 신청서류 및 등록원부의 열람업무를 행한다.
- 설정등록의 공시를 행한다. 〈계속〉